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석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17 발의연월일: 2025. 1. 3.

발 의 자: 송석준 · 김선교 · 김성원

김예지 • 이종배 • 박형수

윤상현 • 박덕흠 • 조배숙

주진우 • 유상범 • 김미애

장동혁 · 이헌승 의원

(14위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출산율 제고의 전제라 할 수 있는 혼인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처음 20만건 이하로 집계되었고, 2023년 기준 19만3,657건까지 추락했음. 덩달아 출생아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약 40만 6,000명에서 2023년 23만명으로까지 감소하여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.72로 역대 최저치에 맴돌고 있음.

우리 국민들이 혼인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사유로는 남녀 모두 결혼자금의 부족(남자 35.4%, 여자 22.0%)을 들고 있음(2022년 통계청 조사).

그런데 작년 혼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였으나 그 기한을 2026년말로 한정하였고, 세액공제금액도 50만원에 불과하여 낮아질 대로 낮아진 저출생 문제와 신혼부부의 재정적 부담

을 경감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존재함.

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, 2027년말까지 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함으로써 혼인을 장려하고 저출생 문제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임(안 제92조).

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2조제1항 중 "2026년"을 "2027년"으로, "50만원"을 "300만원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2조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 ①	제92조(혼인에 대한 세액공제) ①
거주자가 <u>2026년</u> 12월 31일 이	<u>2027년</u>
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	
1회(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	
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	
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)에 한	
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	
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	
세액에서 <u>50만원</u> 을 공제한다.	<u>300만원</u>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